

# 가족돌봄기능과 관련된 세대갈등 가능성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Possibility of Generational Conflicts Related to Family Care-giving Functions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 수 차 성 란\*

Departmen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  
Professor Cha, Sung Lan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generational conflicts around adult children's taking care of elderly parents and grandparents' caring for grand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hild care responsibility of the parents' generation is much more intense than that of the parent care responsibility of the children's generation. Second, the norm of parent care has changed from be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eldest son to being the responsibility of all of the children, which had led to an increased probability of conflicts between the two generations due to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 and reward. Third, the bilateralization of the kinship increases the responsibility of women in taking care of their families, which leads to an increase in conflict among women of different generations. Finally, the generational conflicts related to family care appear across different social classes.

Key Words : 가족돌봄(family care), 자녀돌봄(child care), 부모부양(parental care-giving), 세대갈등(generational conflicts)

---

\* 주저자, 교신저자: 차성란(slcha@dju.kr)

## I. 서론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미흡한 노후준비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주력을 하면서 젊은 층과의 일자리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5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20대를 처음 추월했다는 기사는 일자리 세대갈등의 객관적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조선 비즈, 2014.10.09.일자).

세대갈등은 노동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안에서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자녀돌봄과 노부모부양의 순환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세대갈등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부모부양과 손자녀돌봄은 사회적 지원 없이 가족내 기능만으로 순환적인 요구-충족이 이루어져 왔었다. 손자녀가 출생하면 3세대 가족의 노모가 주 양육자 또는 보조양육자가 되어 돌봄을 수행하고 장년기 부모는 가계생산 노동력으로서 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은 성인자녀세대와의 지연된 호혜성(lagged reciprocity)이 작동함에 따라 역시 자연스럽게 가족 안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

이제 가족돌봄은 시장 서비스에 의존하는 돌봄노동의 사회화,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공공 복지서비스가 기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녀돌봄과 관련해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세 모든 아동에 대해 제공되는 양육수당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부양과 관련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외에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자녀돌봄이나 부모부양 모두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의 미완성과 사적 서비스 지원의 축소가 공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적, 사적 모든 영역에서 가족돌봄이 어려움을 겪

는 시각지대가 아직 큰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보다는 부모부양의식이 훨씬 더 근대적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노년기 부양을 가족에게 의존하겠다는 비율은 2008년도 42%에서 2012년도 33%로 낮아지는데 비해 가족과 정부가 공동으로 또는 정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비율은 각 해당 연도별로 47%에서 52%로 점차 높아졌다(황슬기, 2013). 그럼에도 김경미(2011)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노후생활자원이 부족한 저학력이나 농촌노인들은 가족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보조를 통해 노후생활을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통계청(2013)의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여성노인의 33.2%가 자녀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노인은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경우가 4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거나(25.2%), 손자녀양육(12.3%)을 위해 동거하는 비율도 37.5%에 이르고 있다. 즉, 동거사유 12.3%가 손자녀양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가족들은 가족돌봄 기능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양쪽 경계에서 기능수행의 주류가 정해지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 외부환경변화는 가족기능수행을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 가치관도 근대적 가치로 변하고 있지만 축소된 기능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사적 방식으로 돌봄을 해결해야 하는 개별 가족들은 기능수행 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의 원인들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

부모부양과 손자녀돌봄의 가족내 기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두 기능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복지서비스도 개별적인 지원정책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정서적 자원이 충분치 못한 가족들은 자원의 양적, 질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그리고 자

원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은 돌봄자원의 분배와 보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이 부족한 맞벌이 저소득 가정에서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월 사용시간 720시간(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을 넘어서면 자녀돌봄을 맡아줄 가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돌봄자원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노인부양으로 인해 가족간 불화를 겪거나(고보선 · 허준수, 2005), 손자녀 돌봄에 대해 기대 이하의 보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이 보고된다(김미혜 외, 2011).

본고에서는 가족들이 당면해 있는 가족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할 때, 첫째, 자녀돌봄이나 부모부양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별개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둘째, 두 문제를 공적 서비스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자녀돌봄을 성인자녀 세대만의 문제로 보고, 보육의 내용적 측면에서 부모교육과 양육방식의 문제만으로 접근한다거나 부모부양을 사회가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급확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손자녀돌봄과 노인부양에 대해 정부, 학계, 실천현장 대부분에서 각각 보육문제와 노인문제를 개별적 문제, 특정 세대 내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두 문제의 해결을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속선 상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자녀돌봄과 부모부양을 한 가족의 세대 지속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 가족돌봄 기능 총족의 세대간 순환적 특성을 파악하여, 오늘날의 가족에서는 손자녀돌봄과 부모부양의 순환고리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부모 세대에게 기대하는 손자녀돌봄과 성인자녀세대에게 요구되는 부모부양

의 현황 파악을 통해 가족돌봄의 현상들을 파악하고, 과거 우리 가족의 순환적 돌봄기능이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모-성인자녀세대의 돌봄을 둘러싼 세대갈등의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변화된 가족 및 사회환경 속에서 순환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 II. 세대 및 세대갈등

### 1) 세대의 개념

세대를 구분하여 세대별 특성을 파악하는 시도는 같은 세대인 경우 집단적 동질성을 지니며, 세대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특정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적이며, “세대를 묶는 공유된 개념과 가치”(Esler, 1984, 박재홍, 2008에서 재인용)를 세대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Kertzer(1983)에 의하면 세대는 친족계보, 코호트, 생애주기단계, 역사적 시기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친족계보의 관점에서 세대를 구분하면 조부모-부모-자녀와 같이 가족에서 상호간 관계 위치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구분하는 경우이다. 코호트에 의한 세대는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는 비슷한 연령집단을 일컫는다. 생애주기 단계에 의한 세대는 청소년 세대나 장년 세대와 같이 생애주기의 특정 단계에 속해있는 집단을 일컫는다. 역사적 시기에 의한 세대는 6.25세대, 4.19세대와 같이 특정한 역사적 시대에 생존한 사람들을 일컫는다(한국사회학회, 1990). 이같이 세대구분은 다양한 기준에서 유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따라

상이한 세대에 속할 수 있다(이수연·최인희·김인순, 2010; 구자숙·한준·김명인, 1999).

또한 세대는 집단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단 성원들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세대는 일종의 사회적 위치(location)를 의미한다. 세대는 “어떤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써 동일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게 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구자숙 외, 1999). 그리고 그 위치의 차이는 잠재적 경험의 폭을 결정한다(박재홍, 2008)

사회적으로는 경제발전애 따른 가계경제 수준의 향상, 개인적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세대관계는 몇 가지 변화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전체적인 기간이 길어졌다. 자녀수가 적어지고 부모세대의 가계경제수준이 향상되며,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가족환경 조건의 변화는 자녀세대가 결혼하여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기간을 연장시켰다. 부모세대 역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세대관계의 기간 연장은 자연스럽게 세대관계의 중복으로 이어진다. 중년기에 있는 가족은 부모세대로서 자녀를 지원하며, 동시에 자녀세대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중복된 세대관계의 기간을 갖게 된다. 세대관계의 연장과 중복은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며, 갈등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박경숙, 2003).

## 2) 세대갈등

세대갈등은 세대간의 의식과 행위양식의 차이로 인해 세대간 차이가 지나치게 커져서 원만한 세대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Bengtson, Furlong & Laufer, 1974, 박재홍, 2001에서 재인용)고 여겨진다(삭제요망).

세대간 차이를 곧 세대갈등으로 볼 수는 없지

만 세대차이는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잠재요인이다. 인간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문화적인 또는 제도적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대간 전승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세대간 전승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세대간 경험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세대 변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 때 세대간 경험과 사고방식, 행동양식에서의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세대격차로 보고 있다(Manheim, 1952, 구자숙 외, 1999에서 재인용).

하지만 세대 차이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한편으로 사회의 역동성의 동력이 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세대 갈등으로 표출되어 사회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세대 차이는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 사회는 다양한 집단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통합 노력을 기울여나가게 된다. 집단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채택하는 해결방법이나 전략들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방향 짓는 중요한 결정타로 작용하게 된다.

노부모의 손자녀돌봄,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은 가족원들 사이의 자원교환으로 볼 수 있다. 돌봄노동 제공과 경제적, 정서적 보상의 자원교환으로서 자원교환 시 상호 공평한 교환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Homans, 1961). 손자녀돌봄과 노부모부양의 두 형태의 자원교환은 가족원 사이에서 자원교환에 대한 공평성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가족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손자녀돌봄과 부모부양의 가족돌봄을 둘러싼 가족갈등은 또한 성인자녀세대와 노부모세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갈등의 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박인아·엄기욱(2007)은 노부모와 자녀간 갈등을 “객관적, 주관적 욕구나 성격 혹은 생활태도 및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 상호 대립하고 충돌한다고 지각하는 정서적 대치

〈표 1〉 가족 및 사회 영역에서의 세대갈등

세대갈등 영역	세대 갈등의 사례	
	가족 내	사회
관념적	부양 및 돌봄 관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경로사상 공공예절
권력적	연령 위계의식 부모-자녀관계	연령 위계의식
배분적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세대간 돌봄의 교환	일자리에에서의 노인차별 사회적 노인 돌봄 복지서비스

출처: 이수연 외(2010)를 참고로 재작성.

상태”로 정의하였다.

라일리(1985)는 세대갈등을 관념적, 권력적, 배분적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기본가치와 목표, 태도 등에서 충돌이 있을 때 관념적 갈등이, 특정 연령층에 대해 정당치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 권력적 갈등이, 각 연령층이 부담하는 상대적 기여와 보상의 몫에 대해 수용하지 못할 때 배분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결혼제도, 자녀출산 등에 대한 가치관,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 손자녀돌봄의 책임범위에 대한 인식 등이 관념적 영역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사례이다(이수연 외, 2010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으로 세대갈등은 가족 내 갈등과 사회 갈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가족 내 갈등으로는 부모부양이나 자녀지원의 교환에서의 갈등, 사회 갈등으로서는 세대 간 일자리 배분, 연령에 따른 차별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노인과 비노인세대가 인지하는 세대갈등의 심각성은 돌봄기대와 부양행동 사이의 세대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이수연 외(2010)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세대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적게 받을수록, 성인자녀세대는 노인에게 도움을 많이 줄수록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갈등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세대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세대는 자녀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성인자녀세대는 현재의 부양지원이 자발적 효의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보니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세대갈등에 대한 추세 전망을 질문한 결과 노인은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율이 61.7%인데 비해 비노인세대는 56.5%였으며, 완화될 것이라는 비율은 노인이 10.7%, 비노인이 14.5%로 나타났다. 노인세대는 세대갈등에 대해 비관적이라면 비노인세대는 상대적으로 낙관적 경향이 높았다. 세대갈등을 느끼는 영역에 대해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모두 결혼, 출산,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가족부양에서 세대갈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이수연 외, 2010).

### III. 성인자녀세대의 노부모 부양

200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81년 80.3%에서 2000년에는 54.7%로 감소하였다(최성재·장인협, 2002). 2006년 기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3%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30% 수준이었으며 21.3%는

미혼자녀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7년 5월 9일자). 2013년 통계청 자료에는 60세 이상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32.3%로 낮아졌다. 노인세대의 동거 부양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자녀세대의 노부모 부양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부모 부양은 전통적인 효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인륜적 도리이자 마땅히 해야 하는 규범으로 존재해 왔다(남궁 명희, 2009). 하지만 점차 부모부양의식은 약화되고, 부모들 역시 부모-자녀관계가 예전의 수직적, 순응적 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부양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에 의하면 성인자녀세대 중 부모와 동거하겠다는 응답은 21.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부양이나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해 ‘스스로’ 마련이 49.4%, ‘국가 책임’이 40.5%인데 비해 ‘가족 및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단지 9.6%에 그치고 있었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박명화 외, 2009)에서는 간병을 받아야 할 경우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비율이(42.4%)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고 싶다’(35.2%)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21.3%)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인자녀세대는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비율이 52.4%로 나타나 노인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집에서 자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비율은 12.5%로 노인세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성인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조성남, 2006)에 의하면 피면담자들은 자신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부부끼리 거주하며 자녀와 따로 살기를 원하였다. 또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

녀가 아니라 노인시설이나 실버타운 등 제 3의 거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세대가 부모부양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자녀에게 그러한 부담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독립적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성인자녀세대의 동거는 각기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거나 사회이동의 기회가 적은 층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모-성인자녀간 부양의식이나 연대감을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 오히려 빈곤의 지표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Litwak, 1985)이 설득력을 얻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겠다(삭제요망).

둘째, 장남상속 및 장남부양책임에서 자녀 공동부양 의무로 전환되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시부모부양, 장남부양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김기태·류기형·박병현·박봉길·장창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여성의 노인부양경험에서 친정부모보다는 시부모 부양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아버지 부양의 경우 남편의 출생순위가 장남인 경우 28.0%, 차남 이하인 경우가 12.0%였다. 하지만 친정부모 부양의 경우는 모두 남편이 장남인 경우보다 차남 이하인 경우 부양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재산상속에 있어 부모의 부양의 무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1년도 사회조사(통계청, 2011)에 의하면 부모부양 책임자로 2002년에는 ‘자식 중 능력있는 자가 3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2010년에는 ‘모든 자녀’가 6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노부모 부양을 장남이나 자녀들 중 특정 자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 모두가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부양주체는 장남위주에서 차남, 딸, 며느리, 사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남 이외의 차남이나 결혼한

딸과의 동거율도 증가하고 있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아들과 딸의 공동의무로 인식되어가고 있다(통계청, 2011).

셋째, 시부모와의 도구적, 의무적 부양관계, 친정부모와의 정서적, 호혜적 자원교환관계로 특징 지워지는 양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한 딸과 친정부모 간 도구적, 정서적 지원 교환이 빈번해지고 규범과 의무보다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교류를 맺는 선택성 및 자발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도 나름의 양계화가 진행되어 왔다(김주희, 2009). 취업한 딸이 친정과 근거리 거주 및 빈번한 지원교환을 하게 되면서(최셋별·이명진·김재은, 2003)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양계화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다. 실제 정재기(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 25개국과의 비교를 통해 밝혀진 결과, 우리의 가족관계는 아들, 특히 장자 우위의 부계적 특성이 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재경(1999)의 연구에서는 정서적인 자원의 제공과 수혜는 모두 시부모보다 친정부모와 빈번하게 교환되며, 이수연 외(2010)의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주고 받는다고 하였다.

노부모는 딸보다 아들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고 도움을 주고 받고 부양받기를 기대하지만 애정적 결속에서는 딸에게서 친밀감과 가치관의 일치감을 느끼게 된다(조병은, 1990). 아들은 '규범적 부양'이 강한데 비해 딸은 정서적 유대에 의한 '선택적 부양'의 성격이 강하다.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도구적 부양의무감이 높고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부모와 친밀감(김윤정·최유호, 2007)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장선주·서병숙(1990)에 의하면 아들과 동거할 때 "땀땀하다"라는 응답을 하는데 비해 딸과 동거하는 부모들은 "마음이 편하다"거나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지내 좋다" 등 정서적

인 측면에서 답을 하였다. 한국의 양계화는 서구와 달리 경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 등 의무와 책임은 시부모를 우선시하고 친정과는 정서적 자원교환과 손자녀돌봄의 지원을 받는 비대칭적 특성을 띤다(한경혜·윤성은, 2004).

넷째, 특히 저소득층의 노인부양은 성인자녀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유지나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수발 요구라는 점에서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최정혜(1992)의 연구에 의하면 노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양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순미·박미려(2008)의 연구에서는 중고령자 가구주의 총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제공액과 수혜액이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노인부양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양이(2004)의 연구에 의하면 정기적 수입이 있는 회사원의 경우 부양부담감이 낮았으며, 가계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심리적 부담감이 9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활란(2002), 유수정(2004) 역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부양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백용운·이태숙(2010)은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거나 가족생활수준이 불안정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에서 시간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부모부양은 부담감을 줄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부양스트레스, 부양자 긴장, 부정적 감정, 부양 비용 등과 같은 의미로 다루어진다.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양부담은 부양의 영향 또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재정, 정서적 안녕, 신체적 건강, 사회적 활동 및 개인생활 등 구체적인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나 애로에 대한 부양자의 인지적 평가로 정의된다(권중돈, 1994).

장기요양노인 부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경우 가족결속력, 부양자 자기존

중감 및 유능감 등이 향상되는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지만(Chenoweth & Spencer, 1986), 보다 많은 연구에서 부양부담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피부양자들은 노인부양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 구속감, 부양역할 수행의 중압감, 사회적 고립, 가족관계의 악화, 건강의 악화 등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한다(백용운 외, 2010). 2005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배우자부모와 형제로 인한 부부갈등경험은 남편 24.4%, 아내 36.3%였으며, 자신의 부모와 형제문제로 인한 부부갈등경험은 남편 34.4%, 아내 28.8% 시부모 부양에 따른 부부간 갈등경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여성가족부, 2005). Rankin(1992)의 연구에 의하면 부양자들 중 87%가 만성적 피로, 분노, 우울증 등을 나타내며, 이 중 50%는 친구나 취미를 상실하였고 가족들간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다영·김미경(2003)은 친구와의 만남, 남편이나 자식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없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창주(2010)는 개인적인 휴식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제약을 노인부양에 따른 가장 부정적 요소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은 시간제약으로 인한 부담, 신체 및 건강상의 문제, 사회활동제약,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권중돈, 1994; 이해자, 2005; Novak & Guest, 1989).

#### IV. 노부모세대의 손자녀돌봄

손자녀 돌봄은 이상적인 확대가족의 의식 속에서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되어왔다. 통계청(2005)의 자료에 의하면 추가 출산할 예정인 기혼 취업여성이 시부모, 친정부모의 지원을 원한다는 비율이 55.9%에 이르며, 출산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으로 시부모나 친정부모라 응답한 비율도 58.8%에 이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2013)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영아기 맞벌이 부모 중 어린이집 이용은 63%, 가사대리인은 9.4%였으며, 조부모의 양육도움을 받는 비율은 54.5%로 2명 중 1명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실제 흔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연령은 여러 연구에서(이영숙, 2010; 백경훈, 2009; 김미혜 외, 2011; Lee & Bauer, 2009) 63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배지희·노상경·권경숙(2008)의 연구는 3-8세의 손자녀 1-2명을 돌보는 조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희·김영란·염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조모가 돌보는 손자녀수가 평균 1.3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영아를 돌보는 비율이 39.0%에 이르렀다.

조모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김은희(2005)의 연구에서 하루 평균 12-18시간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었으며,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에서 ‘하루 종일’이라고 응답한 조모가 5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배지희 외(2008)의 연구에서는 손자녀돌봄 시간이 일주일 중 5-6일이 48.6%로 가장 많았고 7일 동안 돌본다는 조모도 21.1%, 하루 4-8시간을 돌본다는 경우가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최인희 외(2012)의 연구에서는 손자녀돌봄 시간은 일일 평균 8.86시간, 주당 평균 47.2시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 조모들이 일반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긴 시간 동안 돌봄에 매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인희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노인이 손자녀 돌봄의 가장 주된 이유는 자녀들의 직장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78.3%)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6)의 연구에서도 전일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경우 딸이나 며느리가 일하는 경우가 62.6%로 나타나



취업에 따른 양육부담이 손자녀 돌봄의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남에게 손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손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맡게 되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최인희 외, 2012; 김미영, 2001; 김은주·서영희,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김은주 외, 2007; 김은정·정순돌, 2011)있었으며,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손자녀돌봄이 70.1%로 비자발적 동기(29.9%)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영숙, 2010). 하지만 이수연 외(2010)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맞벌이인 경우 손자녀돌봄에 대해 노인들은 가능하면 돌보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돌보겠다는 응답이 5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손자녀를 맡아 양육하고 있기는 해도 맡기 전까지 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겪는다. 이미 주변 사람들의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듣고 보아왔기에 자녀들을 결혼시킨 이후 즐기던 편안한 노후생활이 침해를 당할까 걱정하게 된다.

Lee & Bauer(2009)의 연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절반정도가 성인자녀와 동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영숙(2010)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자녀세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돌보는 손자가 달라 동거조모인 경우 친손자(61.2%)가 외손자(38.8%)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비동거조모의 경우 외손자가 친손자보다 많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노부모-딸과의 관계에서 손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모의 교육수준은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조모의 스트레스나 우울감 혹은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정은, 2002; 모선희·이지영, 2002; 최혜경, 2002; 허준수·유수현, 2002). 김미혜 외(2011)의 연구

서는 손자녀 양육에 따른 갈등집단이 비갈등집단보다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할수록 조모의 스트레스나 양육부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인수, 2001). 경제력을 상실한 빈곤 상태에서의 손자녀 양육은 조부모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며, 불안정하고 우울한 심리상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 2002). 과거 전문직에 종사했던 조모들은 손자녀양육시 적극적 부모역할, 교육적 역할에 대한 높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자녀돌봄노동의 실제에 있어서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은 조모들의 경우 돌봄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조모들은 저항도와 고강도의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경훈, 2009). 저소득층 노부모의 경우 가계경제 보조를 위한 취업활동으로 손자녀돌봄이 불가능하거나(김승용 외, 2006; 백경훈, 2009) 또는 반대로 성인자녀세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고강도의 손자녀돌봄을 감수하는 경직된 가족돌봄기능 수행 환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백경훈, 2009)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노부모세대에 의한 손자녀돌봄에 있어 취업모들은 조모에게 자녀양육을 맡김으로써 ‘심리적 불안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다’거나 ‘자녀가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다’, ‘직장생활과 같은 개인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건강상태가 좋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이에 비해 ‘애들의 의견을 다 받아줘 버릇이 나빠진다’, ‘엄마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이 병행되지 않는다’, ‘남아와 여아의 차별이 있다’는 등의 불만사항을 표출하였다(이은영, 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해 조모들은 대체로 만족하거나(배지희 외, 2008; 이영숙, 2011) 즐겁고 보람된다는 응답을(강유진, 2011)이 높았다. 하지만 힘들고 부담된다는 답도 많아(배지희 외, 2008; 강유진, 2011) 손자녀돌봄은 만족과 부담이 공존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노부모세대의 손자녀돌봄은 부모부양의 경우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와 유사한 경험을 겪는다. 첫째, 손자녀돌봄은 조모의 개인적 시간사용의 문제를 야기한다.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정 시간 집안에 머물러야 함에 따라 조모는 절대적인 개인의 자유사용시간을 제약(권인수, 2001)받을 뿐 아니라 시간사용의 융통성이 낮아진다. 노년기 여성에게 있어 친구관계는 생활만족에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지만 손자녀를 돌보노라 친구나 이웃과의 모임(김은정 외, 2011; 김윤주·방미란, 2011; 김은주 외, 2007, 권인수, 2001; 김승용 외, 2006), 취미생활이 불가능해지며, 손자녀양육과 함께 가사노동을 병행함(김은주 외, 2007; 이영숙·박화운, 2000)에 따라 노동시간이 과중되며, 필요한 때에 외출을 한다거나 장보기를 하기 어려워진다.

둘째,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신체적 문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만1세 이전의 영아기 자녀를 돌보는 일은 젊은 부모에게도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질병의 경험을 갖고 있는 조모들은 어린 손자녀가 예쁘기는 하지만 장시간에서 거의 하루 종일 아이돌보기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느낌을 갖게 된다(최인희 외, 2012; 김윤주 외, 2011; 김은정 외, 2011; 김은주 외, 2007; 김승용 외, 2006). 백경흔(2009)의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돌봄 고강도 집단의 경우 손자녀돌봄경험이 없는 무경험집단이나 저강도 집단에 비해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인희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은 손자녀 돌보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 또는 손자녀를 돌보는 동안 살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손자녀양육으로 조모들은 집안 일과 육아의 이중고(김은주 외, 2007)에 시달리며 양육부담 스트레스로 건강악화와 위기를 경험하

고, 신체건강의 악화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기도 한다(김미혜 외, 2004).

셋째, 심리적, 정서적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부모는 친구나 친인척과 사교적인 활동을 추구할 시기에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그에 따른 활동 제한으로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경험(김은정 외, 2011; 김미혜 외, 2004)한다. 손자녀돌봄이 힘들지만 그것을 표현했을 때 성인자녀세대가 부부싸움을 할까봐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조모는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외, 2011).

부모부양이 부정적 영향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조모의 손자녀돌봄은 긍정적 경험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보다 많다. 첫째, 경제력이 없는 노부모에게 자녀들이 주는 수고비나 용돈은 가계에 도움이 된다. 양육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니 받아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느낌, 신체적인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아줄 것이라는 기대에 안심이 된다(김은정 외, 2011). 손자녀양육을 맡긴 성인자녀들이 약간의 용돈을 제공하는데, 한편으로는 성인자녀가 가질 금전적 부담에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고(김은주 외, 2007; 김승용 외, 2006). 보통 20-3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조모가 기대하는 금액은 이보다 높아 6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용 외, 2006). 하지만 강유진(2011)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경우가 25.9%,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경우가 74.1%로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자원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만족을 느낀다. 자신이 손자녀를 돌보아줌으로써 자녀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여겨진다.

또한 성인자녀를 도움으로써 자녀들이 자신에게 고마워한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김은정 외, 2011). 손자녀를 돌보아준다는 것 자체에서 느끼는 보람, 과거에는 미처 느낄 여유가 없었던 부모로서의 자녀양육의 기쁨을 손자녀 양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을 나타냈다(김은주 외, 2007).

셋째, 조모의 손자녀양육은 사람들과의 관계개선, 가족간 유대관계 개선 등의 긍정적 보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Jendrek, 1993). 손자녀양육은 성인자녀들과의 접촉빈도를 높여준다. 자주 만나면서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한 가족이라는 단결된 가족의식을 경험하게 된다(김은정 외, 2011). 손자녀돌봄을 통한 가족관계 인식은 특히 성인자녀 쪽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김승용 외(2006)의 연구에 의하면 조모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돌보는가와 관계없이 고부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조모의 돌봄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고부관계가 매우 좋다는 응답이 85%인데 비해, 조모의 돌봄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 고부관계가 그저 그렇다는 비율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V. 가족돌봄기능을 둘러싼 세대갈등의 가능성

사회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의 ‘효’ 의식은 분명 약화되고 있으며, 노인부양의 실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노인부양의 의식과 실천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손자녀돌봄과 관련해서는 노부모를 가장 선호하는 돌봄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고, 또 상당부분 노부모에게 자녀돌봄을 맡기고 있는 실정인 반면에도 노부모와의 관계는 개인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비용과 혜택의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은퇴를 맞아 노후생활에 접

어들게 되는 노인세대들에게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효 의식이 남아있으며, 자녀돌봄에 대한 책임 의식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들은 노부모를 부양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자녀가 아닌 정부나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와 있고, 그나마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여건은 충분히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이다. 자녀돌봄이나 노인부양과 같은 가족돌봄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공유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공적 분담의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게다가 가족돌봄에 관한 정부의 정책안들을 살펴보면, 분명한 철학적 지향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 현상에 단기적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족돌봄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그 어느 쪽에도 의존할 수 없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들은 가족돌봄과 관련된 변화된 의식과 다양한 적응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장된 균형상태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세대간 갈등의 요소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부양의 의식 및 실천은 약화되고 자녀세대 지원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는 가족돌봄기능의 중심축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부양 의식의 뿌리가 되는 한국인들의 효 규범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덕목으로 여겨진다(김태훈, 2012). 하지만 부양의식은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수준의 부양의식과 부양행동에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장경섭(2001)은 현 사회의 효 규범은 ‘개인적인 성찰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동조하려는 태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부양행동의 내면적 실체가 없는 포장된 효 규범이라는 것이다. 효 규범에 따른 부양행동을 기대하는 노부모세대와 부모부양에 대한 실천의지 없이 사회적 부양의식수준을 따라가야 하는 성인자녀세대는 모두가 가족돌봄의 의식과 행동의 괴리를 통해 정신적 부담감(남

공 명희, 2009)을 갖게 된다.

이에 비해 급변하는 정보사회의 생산인력으로서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젊은 세대는 개인적 성취에 대한 열망을 추구하며, 부모세대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놓지 않고 연장시키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높아진 학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랜 기간동안 교육비를 부담하며, 최근 심화된 청년 실업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 수행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부부관계보다 자녀들의 필요와 요구를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자신의 삶의 만족을 자식의 성공과 행복에서 찾는 한국 노인세대의 자녀중심적 가치관(김은정 외, 2011)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50-59세 부모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대학졸업 때까지’로 여기는 경우가 40.5%로 가장 높았고, ‘혼인 때까지’가 32.9%, ‘언제까지라도’라는 응답은 5.6%를 보여 자녀양육의 책임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 2009). 노인부양의식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자녀책임에 관한 부모의 의식은 여전히 높고,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족돌봄기능의 중심축이 노인 세대에서 젊은이 세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의 대응 방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세대는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낮아진 부양의식과 실천에 대해 불만이나 갈등을 표출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의 의식 수준에 부모세대의 기대수준을 낮추는 하향 조절을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조모는 종래의 권한이나 위세를 잃었지만 세대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21세기에 들어선 노인들은 어느 정도 변화된 가치관에 익숙하게 되어 스스로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김종숙, 2002). 정보사회에서 힘의 우위를 느끼고 있는 자녀세대는 부모들의 생각을 고리타분하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편협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려 한다(조성남·최유정, 2002). 성인자녀세대는 부모부양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부모세대와의 자원교환을 가능하는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조윤주·이숙현, 2004). 성미애·옥선화(1997)는 효 규범 자체가 부모와 자식간의 상호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주장한다. 부모의 간섭이나 통제는 배제시키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당연시하는 편의적인 개인주의(조성남 외, 2002)라 지적되기도 한다. 부모의 통제나 권위는 사라진 상태에서 자녀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은 부모에게서 받을 것을 기대하고 당연시하는 반면, 부모들은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점을 모색(조성남 외, 2002)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장남위주의 상속과 부모부양의 규범이 자녀 모두의 공동책임의식으로 변화하면서 가족돌봄의 책임, 보상기대와 실천 사이의 간극 등 세대간 갈등의 여지가 높아졌다. 우선 노부모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양주체가 장남위주에서 차남, 딸, 며느리, 사위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남 이외의 아들, 딸과의 동거율도 증가하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규범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6). 성별 및 친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던 과거와 달리, 딸과 며느리, 아들과 사위의 역할경계가 유연해지고 있는 것이다(이여봉, 2011).

여기에 법적 제도마저 장남 위주의 상속과 부양 규범을 부정하게 되면서 그 변화의 영향력은 확고해졌다. 1990년에 이루어진 가족법 개정은 기존의 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법정상속분에 대해 장,차남이나 딸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균분상속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적어도 법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청산되었다(김주수, 2009).

규범과 의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원교환이 이루어지는 선택성 및 자발성의 증가(김주희, 2009)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역할경계의 유연성은 노부모부양을 자녀 중 누구라도 담당할 수 있다는 융통성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서로에 대한 기대가 불일치할 여지는 더욱 커지고, 갈등의 잠재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장남 상속과 장남 부양의 규범적 상황에서는 당연히 며느리가 노부모 부양을 맡게 되는데 정서적 유대보다는 상하 서열의 수직적 의무관계에서 비자발적으로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 며느리는 좀 더 부담감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장남 이외의 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맡게 되는 경우, 부모부양에 대해 모든 자녀들이 공동의 부양 의무감을 갖게 된다(김자원, 1993). 또한 부양을 맡은 자녀는 시간적 여유, 신체적 건강, 재정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여유있으며 좀 더 자발성을 갖고 부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양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 세대간 갈등의 가능성도 낮아진다.

반면 부모부양에 대한 규범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느 자녀도 전적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갖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성별이나 친족관계 내 위치에 따라 부모부양에 대한 역할이 규정되지 않으므로 부모부양을 통한 부모-자녀의 교환관계에서 혜택보다는 비용이 높다고 여겨질 때 자녀들은 서로 부양을 미루거나 기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규범에 의한 역할 수행에서 개인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선택적 부양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는 지차남의 위치에 있는 자녀 중 한 사람이 위치 없는 부모부양을 맡게 되었을 때, 부양부담감과 갈등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양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사이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규범이 아닌 선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부모-자녀관계에서 딸과의 관계가 증가하는 양계화와 더불어 가족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데 따른 돌봄문제에서의 세대갈등이 예상된다. 최근 연구들은 가족돌봄의 공급 및 수요가 모두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의 성별화(이수연 외, 2010)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딸과 친정부모와의 가족돌봄노동 교환은 그 특징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딸과 친정부모가 자유로이 접촉할 수 있게 된 환경, 그리고 딸의 취업으로 손자녀돌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여성취업이 증가하면서 손자녀돌봄을 위한 조부모와의 동거 또는 인거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계와의 친근한 정서적 유대관계로 손자녀돌봄을 친정부모에게 맡기기를 원하면서 친정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장남부양의 규범이 약화되는 것과 동시에 손자녀돌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딸들의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도 높아지고 있다(김송애·조병은, 1991). 결과적으로 친정부모와 딸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는 양계화가 진행되면서 부모는 딸의 결혼 이후까지 외손자 돌봄이라는 성인자녀세대 지원을 증가시키게 되고 조모가 손자녀양육의 주체가 되면서 노년기에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과중한 노동부담을 갖는다.

친족관계에서의 양계화는 시가와 처가와의 자원교환에서 다소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 시가와 처가의 접촉은 주로 의례적인 것을 중심으로 제사, 설, 추석, 결혼식, 장례식, 친족의 생일과 같은 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처가와의 접촉은 아이돌보기나 경제적, 물질적 도움, 또는 정서적인 도움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조성남 외, 2002).

돌봄노동의 성별화는 딸과 친정부모와의 돌봄 교환이라는 특징에서 나아가 좀 더 보편적 형태

로 확장된다. 가족돌봄의 공급과 수요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에게서 정서적 및 도구적 도움의 주고받음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들은 정서적, 도구적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며, 신체적 수발도 여자노인들이 더 많이 받는다. 또한 여자노인들은 동거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남자노인의 두 배가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딸인 경우 아들에 비해 정서적 및 도구적 부양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아들보다 딸에게 현물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아들이 딸보다 많이 하고 있지만 비정기적인 현금은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11). 이수연 외(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세대와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제공받는 것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며, 돌봄을 주고 받는 것으로 인한 갈등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에 비해 성인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여성 노인에게 있어 손자녀의 존재는 삶의 동기가 될 정도로(강유진·한경혜, 2002) 중요한 생애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집중적인 돌봄수행의 문제는 배우자 돌봄을 해야 하는 노노케어로 더 극심해진다. 전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정경희 외, 2005) 남자노인의 경우 간병수발의 주체 공자는 절대적으로 배우자인 반면(73.8%), 여자노인의 경우는 장남 며느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36.1%, 다음이 배우자 16.6%였다. 여성들은 자녀양육시기에 자녀돌봄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시작하여, 노인기에는 손자녀돌봄과 배우자 돌봄까지 돌봄노동의 중심에서 있다. 손자녀돌봄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도움을 주기보다, 나이든 아내가 손자녀돌봄으로 인해 남편의 식사

준비나 집안청소가 소홀해지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불만을 표출한다. 여성들은 결국 돌봄과 관련하여 세대간 갈등과 함께 배우자와의 성별 갈등까지도 겪게 된다. 게다가 여성노인은 배우자 사망 후 며느리에게 돌봄을 의존하게 되면서, 여-여간 돌봄교환으로 인한 갈등이 연장된다. 시부모 부양을 전가 받은 며느리들은 우리나라의 전형적 고부갈등의 긴장 속에서 비자발적 부양동기에 의한 부모부양으로 부담감을 더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더 길고, 배우자보다 연령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은 가족돌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세대갈등과 성별 갈등을 겪어야 하는 사회구조적,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넷째, 계층에 따라 가족돌봄과 관련된 세대갈등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돌봄과 관련하여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면서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정미경(2006)의 연구에 의하면 손자녀돌봄을 하고 있지 않은 조모의 이유에 대해 어머니들은 조모가 여가를 즐기기를 원해서라고 답하였지만 실제 조모의 응답은 임금노동을 하고 있어서라는 답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저소득층의 경우 노년기에도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면,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조모가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손자녀 돌봄에 대해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손자녀돌봄을 하게 되는 저소득층 조모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노년기에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성인자녀세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 때 부모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규범이기보다 노부모의 생계유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부모의 경제적 의존성은 세대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인다(손용진, 2008).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조부모들이 부양과

관련하여 성인자녀세대와 좀 더 갈등이 낫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김미혜 외, 2011). 백경숙·김영란(2006)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의 대가 여부가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미영(2001)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대가의 금액이 조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대가를 받은 노인이 받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대가 여부보다는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상층의 경우 가족돌봄과 관련된 세대간 갈등은 저소득층에 비해 좀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자원제공에 대한 보상 기대와 실천 사이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부모세대의 손자녀돌봄이나 성인자녀세대의 부모부양 모두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자발적 선택가능성이 낮아지며, 세대간 갈등은 그 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클 수 있다. 이에 비해 경제적 자원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산층의 경우 손자녀돌봄이나 부모부양 모두 시장의 상품이나 부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 저소득층이 가족돌봄 서비스 공급의 경직성이 크다면 중산층은 경제적 자원활용을 통해 좀 더 융통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돌봄의 세대간 교환과정에서 정서적, 심리적, 또는 가족관계 영역에서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자원의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느낄 때 갈등이 발생한다(Roloff, 1981, 김미혜 외 2011에서 재인용). 실제 사회경제적 계층의 지표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도움을 받는 비율은 낮고 도움을 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동거자녀에게 도움 제공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부모의 경제적 계층이 낮은 가족에서는 성인 자녀세대의 부모부양의식이 경제적 계층이 높은 가족에 비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조성남 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블루칼라(blue color)나 노동자(casual worker)의 경우 가족 내에서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개별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보았다. 계층과 관계없이 가족가치관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 약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화이트칼라나 전문직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분리된 생활 속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부모보다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하려는 의도적 노력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확장시켜보면 부모-자녀간 생활의 분리로 인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력 상실은 부모부양의식에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부양의식은 가족 안에서 부모의 언행을 통한 가르침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할 때, 부모-자녀간 생활의 분리는 첫째,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자녀교육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부모가 자녀교육을 시도한다고 해도 교육적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가치관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커다란 사회적 흐름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심,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에서는 상위계층에 비해 좀 더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부모부양의식과 행동에 대한 기대수준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VI. 자녀돌봄과 노부모부양 관련 정책

### 1. 부모역할지원을 통한 자녀돌봄 정책

정부의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의한 2013년도 정책성과 자료에 의하면 자녀돌봄정책은 크게 자녀돌봄지원강화와 부모역할지원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자녀돌봄지원은 보육 및 교육비 지원확대, 보육시설 서비스의 다양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홍보, 초등돌봄교실 및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역할지원에는 부모교육 및 상담, 예비부부 및 신혼기부부 대상 부모역할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제시된 모든 정책들이 부모에 의한 자녀돌봄부담을 덜어주거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돌봄의 주체를 부모로 한정짓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손주돌보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세대간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서초구의 경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최대 40시간, 시간당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초구에 이어 강남구에서도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2013년 여성가족부는 서초구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와전됨으로써 혼선을 빚은 바 있다(조선일보, 2013. 3.20일자).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의 경우, 일부 센터에서 가족품앗이 사업을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사례가 있다. 센터에서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손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서 세대간 돌봄의 정책 시행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 2. 요양보호사 및 가족원에 의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정책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 내에 의하면 노인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도서, 벽지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동거자가 아닌 사람을 제 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이는 가족요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동거가족요양보호 사에 의한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가족요양비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수급할 수 있어 2009년 12월 기준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0.4%만이 적용받고 있다. 동거가족요양 보호사 제도는 일반 요양서비스와 비교할 때 최대 인정 서비스를 50%수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자격취득 가족원의 수가 지속적 증가를 보였다.

〈표 2〉 2012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주요 성과

영역	주요 정책성과
자녀 돌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아 전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확대지급</li> <li>• 취업부모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li> <li>•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수 전년 대비 3.5% 증가</li> <li>• 초등돌봄교실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확대</li> </ul>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과 94개 운영센터 중 68.8% 기관에서 부당사례가 나타나 제도적 보완의 문제가 큰 상태이다(이윤경, 2010).

## VII. 가족돌봄기능 수행에 따른 세대갈등 완화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가족돌봄기능 약화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가족정책 시행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그 어느 쪽에서도 가족돌봄이 원활치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 세대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데 관심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들은 가족돌봄의 문제를 노부모부양 또는 손자녀돌봄이라는 이원화된 틀에서 각기 문제점을 진단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가족체계에 대한 총체적 접근보다는 사회에서 가족을 바라다보는 외부자의 입장에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가족돌봄기능에서 발생가능한 세대갈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의 생애주기단계 진전에 따라 한 가족내에서 손자녀돌봄과 부모부양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부모 세대에게 기대하는 손자녀돌봄과 성인자녀세대에게 요구되는 부모부양의 현황 파악을 통해 가족돌봄기능 변화의 방향성을 짚어보고 순환적 돌봄기능을 단절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부모-성인자녀세대의 세대간 갈등의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예상되는 가족돌봄기능의 세대간 갈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부모부양보다는 부모의 자녀책임이 강화되는 가족돌봄기능에서 젊은 세대 쪽으로의 중심축 이동, 둘째, 부모부양의 규범이 사라지는데 따른 가족돌봄의 책임, 보상기대와 실천 사이의 세대간 갈등, 셋째,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돌봄의 집중, 넷째, 계층에 따른 가족돌봄의 세대갈등 다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돌봄기능 수행의 세대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부모부양의 경우 정부의 공적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돌봄에 의한 방법을 그리고 손자녀돌봄의 경우 사적방식으로서 조모보다는 지역사회 돌봄에 의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능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부모부양의식과 실천이 약화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은 사적 영역에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분야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노인들 역시 자녀세대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노후생활을 자녀보다는 스스로 또는 시설,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겠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노후생활보장 방식인가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서적 안정이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족 안에서 부양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개별 가족에게 주는 부담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따른 제 3자로부터의 서비스, 공동시설거주를 통한 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돌봄에 의한 방법이 좀 더 선호될 수 있을 것이다. 손자녀돌봄의 경우 성인자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녀돌봄방식으로서 조모에 의한 돌봄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육자와의 유대관계 속에서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에 의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사회 돌봄은 지역사회라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나 무보수 활동에 의한 돌봄(이상원, 2006), 또는 유료서비스 제공자인 ‘케어맘’에 의한 돌봄모듬이나 지역사회 기관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김영란·황정임, 201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팜앗이 사업(고선주, 2012) 또는 가족친화마을의 돌봄기능(차성란, 2010), 지역돌봄 공동체(장수정, 2012) 등 다양한 의미로 접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후의 모형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본다.

둘째, 장남에 의한 부모부양의 규범이 사라지는 데 따라 노부모부양은 자녀 중 누구에 의해서나 부양이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느 자녀도 자발적 부양을 하지 않고 서로 부양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되고, 따라서 노부모부양에서 보상과 비용을 고려한 교환이론적 부모자녀관계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부양규범이 사라지면서 노부모 역시 장남의 자녀를 돌보아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한 손자녀를 돌보아 줄 때, 돌보아주지 못하는 다른 손자녀로 인해 세대간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아직까지 노부모는 경제적 댓가 때문에 손자녀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인자녀세대는 자녀돌봄을 맡기면서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돌봄에 대한 댓가로 여긴다. 즉 손자녀돌봄에서도 교환이론적 관점에서의 부모자녀간 돌봄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럴수록 부모, 성인자녀세대 모두 보상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기대가 충족되지 못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에 있어 가족돌봄제공에서의 기대 결핍을 공적 체계가 보완을 해준다면 갈등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정부가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손자녀돌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이투데이, 2013.3.15일자), 전국적으로 제도를 확산하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돌봄에서부터 시작하여, 딸이나 며느리의 노부모부양, 노년기 배우자 돌봄에 이르기까지 점차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족돌봄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관한 불평등적 성별분업의 의식과 실천에서 해결의 실

마리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우선 자녀돌봄에의 아버지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아버지교육,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을 통해 아버지들이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양육에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는 가족친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주로 자녀와 놀아주는 활동에 치중하는 제한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1999년에 비해 2009년의 경우 남성들의 신체적 돌보기 시간이 늘어났으며, 책읽기와 놀아주기, 기타 활동 시간 역시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송유진, 2011)에서 볼 때 앞으로의 전망이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년층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가정생활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역할찾기’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최보아, 2003)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강희성(2002)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인 문제 다음으로 은퇴후 사회 및 가정생활의 재적응 문제를 고민거리로 꼽고 있었다. 전 연령대의 남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직장교육, 은퇴 전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내 역할찾기로서 손자녀돌봄 참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돌봄에서의 남성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부교육프로그램에 양성평등, 가사노동분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혼기 부부교육프로그램 52개를 분석한 김선주(2013)의 연구 결과 교육목표 영역 9개 중 양성평등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계층에 따른 가족돌봄의 세대갈등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자원의 제약에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가족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부모부양의 경우 부모의 높은 경제적 의존성, 성인자녀세대의 자녀돌봄을 위한 시장서비스 이용에서의 제약, 그리고 경제적 취약성을 갖지 않더라도 취업을 원하거나

취업해야만 하는 기혼여성에게 있어 가족돌봄은 대안 선택이 어려운 경직성을 갖는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가족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돌봄은 이제는 더 이상 가족에게만 또는 시장서비스에만 의존하도록 할 수 없는 국가책임주의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어 있다. 가족돌봄은 개별 가족에게 전적인 책임과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돌봄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가족돌봄은 노동적 특성이 있는 부담을 주는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은 또한 가족생활의 일부이다. 가족돌봄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가족가치가 보존되는 방식으로의 방법을 택하는 철학적 바탕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노인부양을 통해 그리고 손자녀돌봄을 통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가족원으로서의 책임, 역사의 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돌봄을 제공받는 노인 당사자나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족원에 의한 돌봄은 부모로서 부양을 받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존감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족에게만 돌봄을 맡겨서는 안 되지만 가족과 지역사회와 국가가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족에 의한 돌봄을 통해서만 관계적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만족감,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성장발달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는 가족경계를 확장시킴으로써 다양한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에 있어서도 공동체적 방식을 통해 돌봄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국가는 사회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능지원, 가족돌봄 기능면에서 취약한 가족에 대한 기능지원, 또는 보편적

수준에서 개별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 지원 등에 관심을 갖고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유진(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2) 강유진·한경혜(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인생전환점, 삶의 맥락, 적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 3) 강희성(2002). 중고령자의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 욕구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고보선·허준수(2005). 노인의 학대 대처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125-141.
- 5) 고선주(2012). 저출산 대응 :가족내 자녀양육 지원강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1), 53-77.
- 6) 구자숙·한준·김명인(1999). 세대 격차와 갈등의 사회심리적 구조. 심리과학, 8(1), 123-139.
- 7) 권인수(2001).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8) 권중돈(1994). 한국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김경미(2011). 노인부양형태에 따른 노인부양 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기태·류기형·박병현·박봉길·장창호(2000). 중년기 여성의 노인부양에 관한 조사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10(1), 25-51.
- 11) 김미영(2001).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취업모를 자녀로 둔 조

- 모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12) 김미혜·김혜선(2004). 조손가족 손자녀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노년학, 96-219.
  - 13) 김미혜·성기옥·팽경희·최희진·최소영(2011).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부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4), 905-923.
  - 14) 김선주(2013).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15) 김송애·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의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16)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 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17)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8) 김승용, 정미경(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67-96.
  - 19) 김양이(2004).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2), 21-35.
  - 20) 김영란·황정입(2011).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돌봄네트워크모델 개발-초등자녀를 중심으로. 젠더리뷰, 23, 62-64.
  - 21) 김윤정·최유호(2007). 성인자녀의 부모부양 동기에 관한 연구: 성별 및 부양자-노부모 관계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313-334.
  - 22) 김윤주, 방미란(2011).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의 경험: 내러티브 탐구. 질적 연구, 12(1), 59-72.
  - 23) 김은정·정순들(2011).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3), 177-213.
  - 24) 김은주·서영희(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25) 김은희(2005).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조모 역할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김자원(1993). 재미한국교포자녀의 노약부모를 위한 부양활동. 한국노년학, 13(1), 63-74.
  - 27) 김정은(2002). 손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 정서적 안녕과 영향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김종숙(2002). 현대사회의 가족변화와 조부모 역할. 수원대학교 논문집, 20, 1-11.
  - 29) 김주수(2009). 가족법 반세기의 회고와 과제. 가족법연구, 23(1), 1-26.
  - 30) 김주희(2009). 결혼초기 여성의 친족관계: 외동딸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21(4), 95-118.
  - 31) 김태훈(2012). ‘효’ 덕목의 윤리적 의의에 관한 규범적 연구. 도덕윤리교육, 57, 279-301.
  - 32) 김활란(2002). 뇌졸중 환자에 대한 보호자 간호 부담감과 관련된 요인.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남궁 명희(2009).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기혼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관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3), 49-79.
  - 34) 모선희·이지영(2002). 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65-80.
  - 35) 박경숙(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 61-94.
  - 36) 박명화 외 14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37) 박인아·엄기욱(2007). 노부모의 의존성이 성

- 인자녀와 노부모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아동기 피학대경험과 부모부양의식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179-194.
- 38)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39) \_\_\_\_\_(2008). 세대 계승과 사회문화적 변동.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79-98.
- 40) 배지희·노상경·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 379-410.
- 41) 백경숙·김영란(2006). 손자녀 양육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4), 109-128.
- 42) 백경훈(2009). 손자녀 돌봄 경험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신체 및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10(2), 87-109.
- 43) 백용운·이태숙(2010). 노인 부양스트레스가 가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4), 115-136.
- 44) 보건복지부(2011). 2011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45) \_\_\_\_\_(2013). 2012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46) \_\_\_\_\_(2014). 2014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47) 성미애·옥선화(1997). 효 규범에 대한 사적인 고찰-호혜성 및 공정성을 중심으로. 대안가정학회지, 35(3), 245-257.
- 48) 손용진(2008). 노부모-자녀간의 사적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2, 225-248.
- 49) 송다영·김미경(2003). 여성의 취업실태별 노인부양부담과 역할갈등. 한국여성학, 19(2), 145- 174.
- 50) 송유진(2011). 한국인의 일상생활 시간변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 시간. 한국인구학, 34(2), 45-64.
- 51) 여성가족부(2005). 2005년 가족실태조사.
- 52) 유수정(2004). 뇌졸중 노인을 돌보는 주간호 제공자의 부담감과 예측요인. 노인간호학회지, 6(1), 7-18.
- 53) 이상원(2006). 지역사회 돌봄 제공에 대한 인식 제공 방안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3(2), 113-129.
- 54) 이수연·최인희·김인순(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55) 이어봉(2011). 부양지원과 세대갈등: 딸과 친정부모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 가족과문화, 23(1), 41-76.
- 56) 이영숙(2010). 조모의 손자녀 돌봄만족과 관련변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취업모가정의 동거조모와 비동거조모의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9(1), 15-26.
- 57) \_\_\_\_\_(2011). 조모의 손자녀 돌봄 의도에 미치는 돌봄 경험의 영향 : 동거여부에 따른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91-100.
- 58) 이영숙·박화운(2000). 유아기 손자녀가 기대하는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11-232.
- 59) 이윤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급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65, 96-104.
- 60) 이은영(2006). 취업모의 대리양육 경험분석 : 조모의 손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1) 이재경(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55-86.
- 62) 이창주(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3) 이혜자(2005). 치매노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에 따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 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4) 장경섭(2001). 압축적 근대성과 노인문제의 재

- 인식: 신세대로서 노인. 가족과 문화, 13(1), 1-29.
- 65) 장선주·서병숙(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감정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 9, 135-161.
- 66) 장수정(201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마포 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2), 1-31.
- 67)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 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8) 정미경(2006). 손자녀 돌봄노동에 대한 취업모와 조모의 경제적 지원인식과 향후 출산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265-292.
- 69) 정재기(2007).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국제간 비교의 맥락에서. 한국인구학, 30(3), 157-178.
- 70)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1), 105-124.
- 71) 조성남(2006). 노인부모부양에 관한 기혼자녀 세대의 인식:초점집단토론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3), 139-157.
- 72) 조성남·박숙미(2002).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학 연구논총, 9, 39-68.
- 73) 조성남·최유정(2002).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 가족내 세대문제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 74) 조운주·이숙현(200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와 부모부양 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63-74.
- 75)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 76) 최보아(2003).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77) 최섯별·이명진·김재은(2003).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책성 연구: 감정조절이론(ACT)의 수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5), 1-31.
- 78) 최성재·장인협(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79) 최인희·김영란·염지혜(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80) 최정혜(1992).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9), 85-101.
- 81) 최해경(2002). 저소득층 조손가정 여성노인의 우울감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3), 207-222.
- 82)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 결과: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통계청.
- 83) 한경혜·윤성은(2004). 한국 성인 남녀의 부양지원 제공 실태와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65-72.
- 84)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출판사.
- 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6). 가족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2006-2 연구조사보고서.
- 86) 허준수·유수현(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 사회사업, 13, 7-35.
- 87) 황슬기(2013). 노인부양주체에 관한 의식 변화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8) Chenoweth, B. & Spencer(1986). Demmentia: the experience of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26, 267-272.
- 89) Homans, G. C.(1961). Social behavior: Its

-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90) Jendrek, M. P.(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3), 609-621.
- 91) Kertzer, D. I.(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N.Y.: Free Press.
- 92) Lee, J. & Bauer, J. W.(2009). Profile of grandmothers providing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y*, 8(2), 455-475.
- 93) Litwak, Eugene(1985).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 systems*. New York : Guilford Press.
- 94) Novak, M. & C. Guest(1989).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caregiver burden inventory. *The Gerontologist*, 29(6), 171-182.
- 95) Rankin, E. D. et al.(1992). Clinical assessment of family caregivers in dementia. *The Gerontologist*, 32.
- 96) 문화일보(2007년 5월 9일자).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65세 이상 노인 30% 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509010306270460040>
- 9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98) 이투데이(2013년 3월 15일자). “손주 돌보며 돈도 받아요” 서초구 아이돌보미 ‘눈길’.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04047>.
- 99)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http://idolbom.mogef.go.kr/EgovPageLink.do>
- 100) 조선닷컴(2013년 3월 20일자). 주민 건의로 ‘손주 돌보미 수당’ 전국 첫 도입해보니.
- 1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0/201303200015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0/2013032000155.html).
- 102) 조선비즈(2014년 10월 9일자). 50대 정규직 임금근로자, 20대 첫 추월...‘세대간 일자리 갈등’.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09/2014100901630.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09/2014100901630.html).

- 투 고 일 : 2014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4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11월 3일